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조경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하천 둔치구역에 체육시설 설치시 설계기준에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놓히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함
- 하천의 둔치에 펜스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면 홍수발생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펜스가 필요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도록 조경설계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26.5 하천 조경 설계	26.5.9 시설물 설치 가.체육	(3) 체육시설로서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놓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4) 체육시설의 보호막(펜스)은 경기 중 공의 이탈을 방지하

구분		주요(개정)내용
	시설 설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놓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6.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